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약정서 개정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 – 제3조 <좌동>	**제1조 – 제3조 <좌동>**	
제4조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 ③ 은행은 고객의 신용상태, 영업속성, 재무상황, 은행과의 거래현황 등을 최소 연1회 이상 심사하며, 제1항에서 부여된 손실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전혀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실한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은행이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 변경약정서’를 체결하는 날부터, 손실한도를 감액하거나 부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은행이 고객에게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 감액통지서’를 통지하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에 새로운 손실한도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 ③ 은행은 고객의 신용상태, 영업속성, 재무상황, 은행과의 거래현황 등을 최소 연1회 이상 심사하며, 제1항에서 부여된 손실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전혀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과 고객 간의 합의에 따라 손실한도를 변경(증액, 감액, 한도미부여 포함)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은행이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 약정서”를 재체결하는 날부터 새로운 손실한도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고객의 신용상태, 영업속성, 재무상황, 은행과의 거래현황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손실한도를 감액하거나 부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은행이 고객에게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 감액통지서”를 통지하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에 새로운 손실한도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은행과 고객 간의 별도 합의에 따라 손실한도를 변경하는 경우, (증액, 감액, 한도미부여를 모두 포함) 파생상품거래손실한약정서를 재체결코자함.
제5조 – 제11조 <좌 동>	**제5조 – 제11조 <좌 동>**	